

#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·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제896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. 10    고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. 11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5. 1. 15   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입장료에 대한 현실성 있는 조정으로 시설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자 함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제3조(위치)를 제2조로 변경
- 나. 제2조(정의)를 제3조로 변경
- 다. 제2조 및 별표2의 연령표기를 조정
  - . 어린이는 만6세이상 만12세이하를 7세이상 13세 이하로 한다.
  - . 청소년은 만13세이상 만18세이하를 14세이상 19세이하로 한다.
  - . 일반인은 만19세이상의 자를 20세이상 64세이하로 한다.
  - . 노인은 65세이상자로 한다.(신설)
- 라. 제33조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를 삭제한다.

마. 별표2의 수영장 이용방법 및 요금을 조정

| 구 분    | 기 정    |        |       | 조 정    |  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       | 수강     | 자유수영   |       | 수강     | 자유수영   |       |
|        | 매일반    | 매일반    | 1일이용  | 매일반    | 매일반    | 1일이용  |
| 일반인    | 50,000 | 40,000 | 3,500 | 60,000 | 50,000 | 3,500 |
| 청소년    | 40,000 | 30,000 | 3,000 | 50,000 | 40,000 | 3,000 |
| 어린이·노인 | 30,000 | 20,000 | 2,500 | 40,000 | 30,000 | 2,500 |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위치 변경은 조례 내용의 순서 배열을 조정하고 조례 제2조와 별표2의 연령조정은 연령앞의 “만”자를 삭제하고 법률적 표기의 일반을 보완하여 65세이상의 노인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도입하였으며,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자문위원장의 역할 중 임의 결정권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설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2의 수영장 이용요금을 조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수영장 사용료중 월사용료를 1만원으로 인상했는데 다른 시군과의 균형은?
- 답 : 예,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.
- 문 :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현재와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?
- 답 : 탈의실 냉방시설 가동과 질 좋은 타올을 세척 지원 할 것이다.
- 문 : 월 500여명의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사용자가 있을 것 아닌가?
- 답 : 작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위탁관리 하지말고 행정에서 계속 관리 바란다고 했다.

- 문 : 수영 강사가 주4일 4시간 지도하고 입장료 받는 사람, 수영복 대여하는 사람이 각각인데 수영강사도 1시간 근무 연장하고 입장료와 수영복 대여담당도 한사람이 하여 인력절감 하고 위탁관리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므로 행정관리가 바람직하다.
- 답 : 수영강사의 1시간 근무연장과 입장료 수납등을 검토하겠다.

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5. 1.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